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채이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9.

발의자 : 채이배 · 신용현 · 박주민

황주홍 · 김삼화 · 하태경

김경진 · 권은희 · 오세정

김성수 · 이철희 · 박선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농·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.
이는 농·수협은행이 현행법에 따른 ‘금융기관 등’에 해당하는지 불분명
한 데에서 기인함.

그러나 농·수협은행의 출연금은 같은 민간출연금인 특별협약보증 출
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, 양자를 분리 편성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의
명료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, 법 체계상으로도
농·수협은행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.

이에 농·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‘금융회사 등’으로 명시하여 농·수협
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(안 제2조).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

사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“금융회사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.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바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 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</u>
<u><신 설></u>	<u>사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 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</u>
<u>바. (생 략)</u>	<u>아. (현행 바목과 같음)</u>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